#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68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임호선·이연희·이학영

복기왕・김주영・조 국

강준현 · 정준호 · 김병기

김태년 · 송재봉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 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를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채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인건비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이전공공기관이 1년이 지나기전에 해당 지역인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인재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2 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 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감면) ①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이 조 및 제62조의2-----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 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 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 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 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 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 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 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u><신 설></u>

② ~ ⑨ (현행과 같음)

전 등 (연행과 실금)
제62조의2(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 00분의 35 이상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채용한 날부

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인건비만 해당한다)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이전공공기관이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지역인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인재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이전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신청 을 하여야 한다.